

포항시 태풍 피해 중소기업 (제11호 힌남노) 특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1. 접수기간 : ~ 2022. 12. 16. (자금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단,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기업(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 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 ✓ 공장등록증 보유 업체
- ✓ 건축물대장의 제조면적이 500㎡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 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나.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을 발급받은 기업

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또는 사업장이 **포항시 관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 및 건축물대장상의 제조업소 및 공장이 **포항시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3. 지원내용 : 재해 복구 목적의 대출에 한하여 대출금리의 일부(3.0%)를 1년간 지원

가. 대출금리가 3.0% 이하 일 경우, 3.0% 이하의 이자만 보전

나. 2022년 포항시, 경상북도 육성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가능**

다. 대출금에 대한 담보·보증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

라. **재해 복구 목적의 대출에 한함**

4. 상환조건 : 1년 거치, 일시상환

5. 추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2021년 매출액	3억원 미만	3억~30억 미만	30억 이상
융자한도액 (매출액 범위내)	300백만원	400백만원	500백만원

※ 2021년도 매출 초과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2억원)

6. 협력은행 : 시중 11개 은행(포항시 관내 소재 지점에 한함)

-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7. 처리절차

- 대출협의 및 심사(은행) → 신청서 제출(포항시) → 융자 추천(포항시)
→ 추천결과 통보(포항시) → 대출 실행 → 은행의 통보서 제출

8.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적발되거나 발생될 경우,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금액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조치(향후 포항시 정책자금 지원 불가)

- 가. 재해 복구 이외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기존 채무 상환 용도 대출 금지)
- 나.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기업
- 다.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라.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마. 임직원의 자금 횡령, 범죄 경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바. 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미비하여 제출하였고 관계 공무원 보완 요구에 불응한 기업

9.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 기간 : 기간 내, 상시 접수

나. 접수 방법 : 우편 접수, 방문 접수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11층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주무관 최효민 (37683)

다. 문 의 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주무관 최효민(270-2184)

(※ 협조사항 : 각 은행권에서는 대출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 서류

- 1) 태풍 피해 특별자금(이차보전) 신청서 1부 [서식1]
- 2) 태풍 피해 특별자금(이차보전) 운용계획서 1부 [서식2]
-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3]
- 4) 태풍 피해 특별자금(이차보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 5)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1부(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발급)
- 6) 사업자등록증 1부
- 7) 2021년도 표준재무제표(결산재무제표) 1부
- 8)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9) 태풍 피해사진

나. 중소기업 입증 서류

1) 제조업

가) 공장등록 대상인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나)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다) 임대 공장의 경우

(1) 공장등록 대상인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 판단 기준 [붙임2] 참조

라)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2) 그 외 기업 : 4대 보험 사업자가입자 명부(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

11. 대출방법

가. 융자추천 결정 통보 받은 후, 2022. 12. 30.까지 대출 실행 완료

※ 대출취급 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됨

나. 분할대출 금지

다. 추천 결정 후, 은행 변경 불가

12. 기타사항

가.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후 자금신청

나.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붙임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 ~ 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

제조업 판단 기준

※ 제조업의 판단 기준[아래 요건 1, 2, 3 모두 충족]

1.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가. 공장등록 대장에 등재된 기업

나.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제조업소로 기재된 경우

다. 임대공장일 경우

(1)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상 보유구분에 임대표시가 완료된 기업

(2)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상 보유구분에 임대 미기재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목적물이 공장이어야 하며 당해 목적물이 공장임을 건축물대장 등의 증빙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라. 산업단지 소재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상 보유구분에 임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단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제조업 불인정).

2. 2021년도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제조원가명세상 재료비의 지출금액이 있어야 함

3.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52조,제55조참고)

접수번호	NO.	3.0% 지원
------	-----	---------

업 체 명		대 표 자	(남, 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 (-) H.P ☎ (-) FAX (-)		
설 립 일 자		업 태	
상시 근로자수	명	업 종	
매 출 액 (2021)	백만원	신 청 금 액	백만원
대 출 은 행	은행 지점	*대출담당자 확인사항	대출가능 (여, 부)
대출은행 연락처	FAX : 전화(직통):		담당자: (인) 은행장: (인)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경남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포항시 태풍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이차보전) 운용계획서

2. 운용 계획

용 도	금액(백만원)
총 계	
피해 복구 수리비	
피해 자재 재구입비	
복구 인력 인건비	
기 타	

본 기업은 태풍 피해 복구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목적 및 용도 외 대출금 사용 시 이자 지원금 전액이 환수대상이며, 향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대표명 :

【서식3호】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포항시 귀하

- ☐ 본인은 「포항시 태풍 피해 극복 운전자금 이차보전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포항시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중소벤처기업청, 감사원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융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smba.go.kr>)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4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풍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이차보전) 신청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특별 피해자금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500㎡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_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포항시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 여부 2. 일반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중소기업 정책자금,재해기업 긴급경영운전자금 지원이력 / 지방세 납세증명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여부)

<유의사항>

1.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